

韓國水產業의 海外進出戰略에 관한 研究

Foreign Entry Strategies for Korean Fishery Firms

金 會 千*

Hoe-John Kim

目 次

第一章 序 論	第一節 國際水產機構加入 및 雙務國間 水產 協定締結 擴大
第二章 우리 나라 遠洋漁業의 國際化戰略의 代案	第二節 經濟 및 水產技術協力の 強化
第一節 海外直接投資方法	第三節 水產技術革新의 促進
第二節 企業移民方法	第四節 金融 및 稅制支援의 強化
第三節 共同事業方法	第五節 外換管理業務의 改善
第四節 漁場開發進出方法	第四章 結 論
第五節 海外進出方法의 選定	參考文獻
第三章 遠洋漁業의 國際化 促進政策	Summary

第一章 序 論

第一節 研究의 目的 및 課題

水産物은 다른 食糧資源과 比較할 때 아직도 豊富하고 開發 可能性의 餘地가 크다고 본다. 즉 水産物의 世界 總生産量은 現在 大略 8,000萬屯 規模이나 바다를 잘 開發 管理한다면 現在 生産量의 20~30倍로 生産規模가 大幅 增大될 수 있다고 豫想되고 있다.¹⁾ 이러한 狀況下에서 人類의 基本的인 食糧問題의 解決은 水産食糧의 效率的인 開發과 活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穀物 食糧의 自給自足이 實現되고 있지 않아 外國으로부터 이를 輸入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水産食糧의 確保와 開發은 더욱 重要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水産業은 飛躍的으로 發展하여 現在 世界上位圈 水産國에 속하며 生産은 9位, 輸出은 5位の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最近에는 그 伸張이 鈍化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나라의 遠洋漁業環境이 惡化되었다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1973年 「오일쇼크」(oil shock) 이후 油類價格이 急上昇하여 水産用油類 價格은 三次에 걸쳐 대폭 인상되었다. 더욱이 資源의 民族主義(resources nationalism)의 거센 열풍이 일기 시작하자 많은 沿岸國들은 앞을 다투어 經濟水域 200海里를 宣布하고 自國의 領土를 바다에까지 延長하는 方向으로 水産資

* 국립 수산물 검사소, 제2검사과장.

1) 李光榮, 「무진장의 寶庫」, 韓國日報, 1982年 7月 2日, pp.5~8.

源確保 政策을 強力히 施行함에 따라 既確保 海外漁場도 喪失 내지 縮小되고 있다.²⁾ 또한 漁船의 老朽化 및 人件費의 상승 등으로 우리 나라 遠洋漁業會社들은 國際的 比較優位를 蠶食당하고 있다.

위에 예로 든 바와 같은 우리 나라 遠洋漁業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들을 解決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여러 代案이 論議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代案中的 하나로 研究者는 우리 나라 遠洋漁業會社들은 國際化戰略을 効率的으로 追求함으로써 앞서 指摘된 問題들의 一部나마 解決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本 研究에는 新海洋法 秩序의 再定立 및 水産資源의 武器化 等に 對處하기 위한 重點戰略으로서 國際化戰略을 體系的으로 摸索 檢討하여 그 解決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本 論文에서는 우리 나라 遠洋漁業會社들이 活用할 수 있는 國際化戰略의 代案에는 무엇이 있으며, 또한 特定企業의 立場에서는 이들 戰略의 代案을 어떻게 評價, 選定하여야 하는가를 分析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國家的 觀點에서 遠洋漁業會社들의 國際化戰略을 効率的 및 制度的으로 支援하는 데 必要한 國家政策의 方向도 論議하려고 한다.

第二節 研究의 重要性

우리 나라의 遠洋漁業會社들은 주로 單純入漁方法을 통하여 遠洋漁業에 從事하고 있으나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遠洋漁業의 環境變化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200해리 선포, 油類價의 引上 및 漁船의 老朽化 등으로 經營與件은 악화된 반면에 水産物의 價格은 계속 하락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人件費 上昇 등으로 單純入漁方法만으로는 遠洋漁業의 지속적인 성장은 많은 限界에 부딪치고 있다고 하겠다.

이성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키 위한 다각적인 國際化戰略이 體系的으로 研究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研究가 부족하고 文獻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 遠洋漁業 育成을 위하여 水産廳 및 韓國遠洋漁業協會에서 發刊된 政策報告 資料 및 聯關資料들 중에도 遠洋漁業의 國際化 戰略에 관한 研究는 극히 稀少하며 可用하더라도 部分的이며, 短片的인 分析과 提案에 不週하다. 學界에서도 우리 나라 遠洋漁業의 國際化戰略의 重要性은 擧論하여 왔지만 이에 대한 體系的인 研究가 空白狀態에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우리 나라 遠洋漁業의 國際化戰略을 體系的으로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研究課題라 하겠다. 즉, 遠洋漁業의 國際環境 變化와 이에 따른 우리 나라 遠洋漁業의 問題點分析, 國際化戰略을 위한 代案의 開發 및 提示, 이들 代案의 評價 및 選定을 國際化戰略의 테두리 속에서 종합적으로 分析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國際化戰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여 주기 위한 國家政策의 方向 等を 研究하는 것은 意義있는 것이라 하겠다.

第三節 研究의 方法

本 研究를 위하여 먼저 既存의 各種 國內外 資料를 수집, 분석 整理하였다. 國內資料로는 水産廳

2) 張元碩, 「食糧政策과 水産業」, 韓國水産振興會, 1982. pp. 6~8.

韓國 水産業의 海外進出戰略에 관한 研究

의 水産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遠洋漁業의 現況과 育成策, 水産施策, 業務計劃報告, 主要水産 資源保有國 現況과 漁業進出方案, 주변국의 200해리 經濟水域設定에 따른 沿近海漁業對策 等과 韓國遠洋漁業協會의 週刊誌인 遠洋漁業, 單行本인 海洋 200해리 시대의 遠洋漁業 育成對策, 遠洋漁業 統計, 韓國遠洋漁業의 位置와 그 새로운 進路 等を 주로 活用하였다.

國外的 資料로는 月刊誌인 英國의 「Fishing News International」 및 「World Fishing」, 濠州的 「Australian Fisheries」, 美國의 「Marine Fisheries Review」 및 佛蘭西의 「La pêche Maritime」 等과 UN의 FAO가 單行本으로 發刊하고 있는 「Year Book of Fisheries Statistics」 및 「International Regulation of Marine Fisheries」 等を 주로 參考하였다. 이러한 文獻調査를 통해서 遠洋漁業의 環境變化와 우리 나라 遠洋漁業의 문제점을 分析하였다.

다음에는 企業의 國際化를 위한 海外進出 戰略의 分析的 틀에서 우리 나라 遠洋漁業會社들이 活用할 수 있는 海外進出戰略의 代案의 方法을 分析, 提示하였다. 이러한 代案의 方法을 提示함에 있어서 되도록 相互排他的(mutually exclusive)이며, 이들 모든 代案을 合하면 國際化戰略의 代案들이 모두 포함(jointly exhaustive)될 수 있도록 國際化戰略을 分類하려고 試圖하였다.

그 다음에는 特定企業의 立場에서 이러한 代案의 方法들을 어떻게 分析하고 評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規範的 接近方法(prescriptive approach)으로 檢討하였으며, 특히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의 觀點에서 接近하였다.

마지막으로 遠洋漁業會社들의 國際化戰略을 效率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國家政策 方案은 誘因政策(inducement policy)의 테두리 속에서 提示하려고 한다. 이는 遠洋漁業會社의 國際化戰略의 推進方案을 國家政策的인 觀點에서 論議하는데 있어 가장 核心的인 問題는 어떠한 國家政策 手段이 가장 效率적으로 遠洋漁業會社의 國際化를 誘導할 수 있으며, 그 誘因效果는 어떠한가를 分析하는 誘因政策의 테두리에서 國家政策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第四節 研究의 構成 및 範圍

第一章의 序論에 이어 第二章에서는 우리 나라 遠洋漁業會社들이 活用할 수 있는 國際化戰略의 代案으로서 海外直接投資方法, 企業移民方法, 共同事業方法 및 資源開發進出方法을 提示하였다.

第三章에서는 遠洋漁業會社의 海外進出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各種 政策方案을 論議하였다.

즉, 遠洋漁業의 育成을 위한 國際水産機構에의 加入 및 雙務國間水産協定締結의 擴大, 經濟 및 水産技術協力の 強化, 水産技術革新의 促進, 金融 및 稅制支援, 外換管理業務의 改善方案等を 重點적으로 提示하였다.

마지막으로 第四章에서는 要約 및 結論에 이어 앞으로 누군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研究課題를 提示하였다. 未來의 研究課題를 제시한 이유는 本 論文에서 抽出된 結論의 範疇은 우리 나라 水産業이 國際化하기 위한 要件과 戰略方向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遠洋漁業의 미래에 대한 측면에서의 專門的인 研究와 調査가 要望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第二章 우리 나라 遠洋漁業의 國際化戰略의 代案

第一節 海外直接投資方法

水産部門에서 海外直接投資의 形態로 進出した 우리 나라 企業體의 數는 30餘個社이며, 總投資額은 800餘萬弗에 이르고 있다. 進出對象國은 아르헨티나, 칠레, 모리타니아, 모로코, 멕시코, 오만, 뉴질랜드, 미국 및 파나마의 9개국이며, 出漁海域은 大西洋沿岸, 南部水域, 모로코水域, 뉴질랜드沿岸, 中東部太平洋, 中東部大西洋, 南緯 40° 以南 水域과 칠레沿岸이다. 또한 直接投資의 目的은 「트롤」, 은대구통발, 오징어채낚기, 참치延繩 같은 遠洋漁業과 冷凍業 및 水産物 販賣業務 등을 海外에서 직접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水産業部門에서 우리 나라 企業의 직접 투자는 주로 合作投資(協力事業包含)의 形態가 압도적으로 많다. 우리 나라 企業의 海外單獨投資의 例로는 大林水産(株)에서 1980년에 US \$ 250萬을 100% 單獨으로 投資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현재 大林水産은 1,500G/T級 「트롤」漁船 2隻으로 南緯 43° 이 남의 칠레漁場에 出漁하여 年間 4,000~5,000%의 메루루사 및 왕게 등을 漁獲하여 日本에 輸出하고 있다. 이 밖에도 5개사가 파나마國에 US \$ 50,000을 100% 投資하여 참치延繩漁船 7隻을 進出시키고 있다.

以上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遠洋漁業會社들의 海外直接投資實績은 進出企業의 數, 進出對象國, 進出海域의 數 및 投資規模 등으로 보아 미흡하다고 하겠다.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UN 海洋法 協約의 締結, 國際水産機構의 機能變化 및 主要沿岸國들의 經濟水域宣布 등으로 單純入漁方法으로는 기존의 海外漁場을 유지,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 나라는 보다 적극적으로 각종의 海外直接投資 形態로 海外市場을 確保해야 할 必要性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水産業에서의 우리 나라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으로는 우리 나라와 競爭狀態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海外直接投資의 形態로 다른 나라의 漁場을 確保하려고 하므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 水産會社가 海外直接投資의 形態로 進出해 있는 뉴질랜드近海의 경우를 例로 들면 우리 나라는 日本, 美國, 台灣, 英國, 蘇聯, 스페인, 유고 및 폴란드와 같은 경쟁國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만 하는 實情에 있다.³⁾

이밖에도 우리 나라의 遠洋漁業會社들은 海外直接投資의 經驗不足과 이에 따른 國際競爭力의 微弱, 情報의 不足, 資金確保, 「마케팅」能力的 부족 뿐만 아니라 現地人的 排他的 國民性, 合作先의 財力不足, 現地國의 不安定한 政治狀況等에 따른 政治的 危險等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海外漁場을 계속 擴大해 나아가려면 海外直接投資方法을 보다 積極的으로 活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進出對象國을 多樣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Highway Publications Ltd, 「Hake venture off California」, 「Rockfish joint-venture try out」, Fishing News International, 1982年 9月, p.28 및 1981年 10月, p.17.

韓國 水産業의 海外進出戰略에 관한 研究

現在 西部「아프리카」沿岸國들은 물론 스리랑카, 印度 및 파키스탄 등과 같은 沿岸國들도 우리나라와 遠洋漁業 分野의 合作投資事業을 희망하고 있다.⁴⁾

특히 西部「아프리카」의 赤道帶에 있는 「가나」國 沿岸水域을 例로 들면 「엘로우핀」, 「블랙스킵잭」, 「알바코」, 「빅아이」 및 「스킵잭」 등 多様な 종류의 참치類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外國漁業會社의 直接投資를 환영하고 있다.⁵⁾

現地에는 많은 外國의 水産企業들이 單獨投資 또는 合作投資 등으로 進出하고 있으며, 이들 外國漁船의 操業은 활발하여 「가나」國 沿岸에서 操業하고 있는 總 漁船 隻數中 70%가 外國籍 漁船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遠洋漁業會社들도 加工業分野를 포함한 前方統合戰略 方法의 現地直接投資形態의 進出이 有望視 된다고 본다.

더 나아가 現地 「가나」國 海域에서 捕獲되는 풍부한 水産資源을 加工하여 인근 「아프리카」 諸國 또는 歐洲諸國 등으로 再輸出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우리나라 水産業界 企業의 進出이 先行된다면 現地 市場에 대한 輸出 增大에도 큰 도움이 되는 물론 인근 諸國에도 輸出할 수 있는 波及 效果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들 나라들에 대한 效率인 直接投資 方案을 모색하려면 事業妥當性(feasibility study)을 體系의 으로 分析하여야 한다. 또한 直接投資의 形態도 進出對象國에 따라 多樣化할 필요가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海外直接投資는 所有權 比率, 合作先 및 合作條件에 따라 매우 다양한 方法이 있으며, 각종 方法은 각각 長點과 短點이 있다.⁶⁾

例를 들면, 單獨投資에 의한 入漁方法은 100%의 所有權, 經營統制權의 安全確保, 利益의 獨占, 經驗과 知識도 가장 廣範하게 蓄積할 수 있는 등의 利點이 있다. 그러나 資本과 人力이 많이 投資되어야 하므로 合作投資方法보다 위험 부담도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海外에 投入될 수 있는, 資本, 人力 및 技術이 限定되어 있는 경우, 單獨投資方法으로 進出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

反面에 合作投資는 海外直接投資에 따른 위험을 合作先과 分擔함으로써 合作對象企業의 強點을 最大한 活用함과 동시에 自社의 부족한 弱點을 補完할 수 있다.⁷⁾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進出對象國의 興件, 適切한 合作先의 有無, 進出하려는 企業의 能力 등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가장 適合한 直接投資方法을 選定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二節 企業移民方法

現在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漁場에 企業移民方法으로 進出하고 있다. 아르헨티나海域은 潛在 資源量이 1,000萬屯 以上으로 推定되고 있고 持續的인 生産可能量은 250萬屯 程度가 可能하다고 判斷되는 未開發된 主要漁場이다.⁸⁾ 이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南氷洋 「크릴」새우 資源開發의 進出基

4) IPC Industrial Press Ltd, 「Poaching more profitable than joint projects」, World Fishing, 1982年 8月, p. 5.

5) 韓國遠洋漁業協會, 「가나의 참치漁業 및 市場動向」, 遠洋漁業, 第473號, 1983年 3月 15日. pp. 41~44.

6) 潘柄吉, 「國際經營論」, 博英社, 1982年 9月 20日, pp. 250~261.

7) 金貞世·朴大衛·池龍熙, 「貿易學概論」, 博英社, 1983年, pp. 314~315.

8) 申泰榮, 「아르헨티나 漁業移住의 必要성과 그 展望」, 現代海洋社, 1982年 6月, pp. 54-57.

地 및 南美에 있는 諸沿岸國의 進出據點으로도 매우 重要한 地域이므로 政府에서는 1977년부터 이 地域의 漁場確保를 推進하여 왔다.⁹⁾

아르헨티나가 自國海域에 他國 漁業會社의 企業移民에 의한 入漁를 開放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韓星企業(株)가 移住民의 現地 適應 可能性 및 漁場資源 開發 等 移民送出的 事前準備段階인 合作投資事業을 現地企業과 共同으로 展開하고 있다.

韓星企業(株)은 現地國의 對方企業인 「productos Del Mar S. A.」社와 現地法人을 設立하여 1981年 12月 및 1982年 3月에 2,400噸級 「트롤」漁船을 各 1隻式 出漁시커 操業中에 있다. 또한 1982年 下半期에 1隻을 追加로 投入하여 漁場性 調査를 實施한 結果 企業移民에 앞서서 展開된 合作投資事業의 妥當성이 確認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政府豫算을 確保하여 年次別로 400世帶의 移民, 冷凍工場 및 住宅建設, 그리고 漁船 8隻을 投入하는 企業移民事業을 年次的으로 推進할 計劃이다.

漁業의 企業移民方法은 莫大한 資金所要는 勿論 進出企業의 收支와 移住漁民의 生計維持 및 定着 等に 많은 問題點이 있다. 따라서 經濟의 下部構造가 잘 갖추어지고 隣近에 좋은 漁場을 가진 地域에 進出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르헨티나側이 投入漁船의 船齡 및 開發漁場을 制限하였을 뿐만 아니라, 人口의 分散을 理由로 漁業의 下部構造의 施設이 不備하고 潮汐干滿의 差가 極甚하여 船舶繫留가 不便한 「분파」基地港을 移民定着地로 指定하는 等 많은 制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가 그간 政府의 交涉團 派遣과 現地 公館을 통한 持續的인 交涉에 많은 努力을 기울인 結果 最近 아르헨티나側이 가장 큰 問題點으로 擡頭되었던 移民定着地를 港口施設 및 陸上施設 等 比較的 與件이 좋은 「데시아도」港으로 變更하고 投入漁船의 船齡도 船舶 確保가 不可能할 때는 相互協助에 의해 打開方案을 摸索하겠다는 等 制限條件을 大幅 緩和하였으므로 企業移民方法의 成功 可能性은 보다 커졌다고 하겠다.

第三節 共同事業方法

現在 우리 나라는 美國에서 共同事業方法을 活用하고 있다. 즉 美國의 領海內에서 美國漁民들이 漁獲한 水産物을 韓國의 工母船들이 海上에서 收買하여 加工하는 事業을 展開하고 있다. 이러한 共同事業을 통하여 우리 나라는 美國의 水産政策에 協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對美 漁獲[쿼타]의 增量確保를 할 수 있다. 反面에 美國側은 自國漁民들의 所得增大 및 底棲魚 漁撈技術의 開發을 위하여 이러한 共同事業을 推進하고 있다.¹⁰⁾

美國과의 最初의 共同事業은 1978년에 우리 나라의 韓國水産開發公社와 美國의 「FPA」社 間의 雙務契約에 의하여 推進되어 왔으며, 1981년까지는 韓國水産開發公社로 窓口를 一元化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側의 韓國水産開發公社의 工母船 動員 및 資金負擔 能力의 不足과 FPA社의 子船動員 能力의 不足 等 兩國의 對方企業 共히 事業遂行 能力이 不足하여 同事業이 圓滑히 遂行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韓國遠洋漁業協會를 中心으로 北洋出漁業界가 自律的으로 事業을 推

9) 韓國遠洋漁業協會, 「南美漁業移民 來年부터 本格化」, 遠洋漁業, 第463號, 1982年 10月 26日, p. 13.

10) 水産廳,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文苑社, 1982年, pp. 195-197.

韓國 水産業의 海外進出戰略에 관한 研究

進토록 함과 同時에 事業量도 擴大하도록 推進하였다. 이 結果 事業窓口를 高麗遠洋과 「FPA」社 및 東遠産業을 비롯한 餘他 11個業體의 合作投資水產會社(joint-venture Fisheries Ltd)로 二元化하여 1982년부터 事業의 推進方法을 變更하였다.

業體別 事業實績은 高麗遠洋이 1982年 1月 10일부터 母船 4隻을 動員하여 美側 子船 8隻으로부터 最初의 計劃 3萬屯을 超過한 31,779屯의 漁獲物을 收買하여 1982年 4月 30日에 事業을 終了하였다. 東遠産業을 비롯한 餘他 11個 業體는 1982年 1月 20日 事業에 着手 工母船 5隻 및 非工母船 8隻을 動員하여 美側 子船 7隻으로부터 最初 計劃15,000屯을 超過한 16,321屯을 收買하여 1982年 4月 20日 事業을 終了하는 等 兩社 共히 目標量을 超過 達成하였다. 前年과 달리 事業遂行 過程에서도 특별한 問題點이 惹起되지 않아서 美國政府도 滿足을 表明하고 있다.

이러한 共同事業을 통하여 앞으로 美國으로부터의 漁獲「쿼타」割當에도 間接적인 寄與가 豫想되므로 繼續 同 事業을 擴大시켜 나아갈 必要가 크다고 본다.

第四節 漁場開發進出方法

우리 나라의 海外 水產資源 開發은 1957년에 처음으로 印度洋에 참치延繩試驗出漁를 始作으로 그 동안 「트롤」, 가다랑이채낚기, 은대구底延繩, 도미 延繩 및 새우 「트롤」等 새로운 漁具漁法에 의한 資源開發 뿐만 아니라 未開發 資源漁場인 「뉴질랜드」近海, 호주北部海域, 칠레近海, 알라스카灣 및 南氷洋크릴 새우漁場에 대한 試驗開拓을 實施하였다.¹¹⁾

1978년에 처음으로 南氷洋漁場에 南北水產 代表 沈柄植 所屬 南北號가 試驗出漁를 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大船遠洋 代表 金昌吉 所屬 大船號가 1981年 11月 28日~1982年 3月 9日 사이에 南緯 60°以南 東經 55°~95° 海城에서 漁獲 및 漁具漁法 試驗을 276回, 生物調査를 113回, 5個 品目에 걸친 食品加工 試驗을 實施하여 1日平均 41屯을 生産함으로써 同期間中 總 1,429屯을 漁獲하였다.

南極의 「크릴」새우 資源은 5~10億屯으로 推定되고 있으므로 世界 總漁獲量과 비슷한 7,000萬屯의 年間 潛在資源量을 確保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또한 年間 食用生産可能量은 1,000萬屯으로 未來의 蛋白質 食糧 供給源으로 脚光을 받고 있다. 日本에서는 屯當 價格이 US\$ 700~1,000이므로 「크릴」새우 資源의 開發 및 販賣는 事業性이 매우 좋다.¹²⁾ 따라서, 우리 나라의 遠洋漁業會社들은 「크릴」資源의 開發輸入 및 外國에의 販賣戰略에 보다 많은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

참치 旋網漁業에 있어서는 中部太平洋 漁場의 既得權 確保와 一時 多獲漁法인 同漁業의 資源開發을 위하여 1979년에 처음으로 1隻을 投入하여 試驗出漁를 한 이래로 1980년에 2隻, 1981년에 4隻, 즉 東遠産業 1隻, 三洋企業 2隻, 三富實業 1隻 等を 靑島와 「파라우」에 投入한 바 있다.

東北太平洋의 참치資源을 開發 販賣하기 위하여 1982년에 7隻이 出漁하였으며, 또한 1983~1987年 사이에는 6隻이 새로이 投入될 豫定이다. 同 참치 旋網漁業은 他漁業과는 달리 多數船舶을 投入하여야 情報交換 및 船團操業으로 生産能率을 提高할 수 있으므로 繼續船幅을 擴大하여 既得權을 確保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11) 水產廳, 「水産業의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文苑社, 1982年, pp.116-117.

12) Australian Fisheries Div., 「Krill potential for the future」, Australian Fisheries, 1980年 5月, p.13.

<表 3-6> 新漁場 및 新漁法 開發의 現況 및 問題點

開發事業	開發 및 必 要 性	現 況	問題點 및 開發事項
◦ 南極 Krill 開發	◦ 未來의 水産食糧開發 參與 ◦ 可用漁獲量 : 年間 1億%推定 ◦ 操業實績 거양으로 既得權 確保	◦ 1978.12, 南北號試驗操業 實施 ◦ 1981.11, 第707大船號의 本格 操業으로 企業化의 初期 基盤 構築 ◦ 1982年 事業豫算 7億 3千萬원 確保하고 出漁	◦ 高食品化를 위한 處理, 加工技術 開發 ◦ 試製品에 對한 弘報와 消費促進 ◦ 船團操業에 의한 漁場의 效率의 利用
◦ 南美 트롤 漁場 開發	◦ Argentine, Chile 및 Uruguay 沿岸은 大陸棚이 發達한 저서 魚種의 好漁場이나 未開發 狀態에 있음. ◦ 自體開發이 難하여 合作開發로 권장중이며 스페인, 日本, 폴란드 및 西獨이 進出	◦ 韓星企業이 알제틴 漁業移民 進出 業體로 選定하여 1979年 11月 合作事業 推進 ◦ 大林水産이 Chile에 現地 合作 會社를 設立 1978年 11月 1, 500G/T級 트롤漁船 2隻을 投入 操業中.	◦ 先漁場性 및 事業性 檢討後 移民送出 ◦ Argentine에 要求하는 46°S 以南 漁場에 대한 試驗操業 ◦ Chile의 경우 메루루사의 商品化 提高 技術 開發 ◦ Argentine, Chile를 基地로 한 南極捕鯨 및 Krill 漁場 開發
◦ New Foundland 漁場 開發	◦ 世界三大漁場의 하나로서 대구, 눈볼대, 가자미, 광어, 오징어, 청어의 好漁場形成 (年間 85~100萬%) ◦ Canada 政府는 合作事業에 의해 同漁場 開發과 特別히 買魚 加工事業을 권장하고 있음.	◦ 三元漁業에서 1,500G/T級 트롤 漁船 1隻을 投入하여 Canada 200海里 水城外側에의 操業中.	◦ NAFO 加入 또는 Canada 政府와의 漁業協定締結로 安全操業 基盤構築 ◦ 三元漁業의 試驗操業 結果分析과 周年 操業을 위한 漁場性 調査
◦ 北海道 周邊 漁場의 中層 트롤 開發	◦ 1980年 9月 韓·日水産廳長間 合意에 따라 저층 트롤 漁場은 거의 상실 ◦ 一部許容 漁場內에서의 日本側의 故意的인 操業 妨害로 正常操業 不可 ◦ 規制水城 外側漁場은 大陸棚 傾斜가 急하여 現在의 漁法으로서는 操業不能. ◦ 資源의 持續的인 利用과 난획防止 및 未利用 中層 資源 開發	◦ 操業水城 및 期間規制로 인한 漁獲量 減少와 採算性 惡化 1979年 : 125,000% 1980年 : 77,000% 1981年 : 56,000% 1982年 : 35,520%	◦ 明太산란 洄游時 外海에서의 中層 트롤 漁法에 의한 操業 開發 ◦ 청어, 광치類 등에 의한 中層 海法 開發
◦ ICSEAF 漁場 開發	◦ 同水城은 年間 280萬%에 達하는 漁獲量을 產出하고 있으나 南阿聯을 除外한 沿岸國의 漁獲能力은 全無 ◦ 蘇聯 100萬%, 南阿 60萬%, 스페인 20萬%, 폴란드 13萬% 등 外國漁船의 操業場.	◦ 1981年 我國의 ICSEAF加入으로 進出基盤 造成 ◦ 1982年 漁獲쿼타 6,200%을 받아 大林水産을 事業者로 選定 1,500C/T級 트롤漁船 1隻 出漁	◦ 대구, 메루루사 등 既存漁場에의 進出과 實績거양으로 既得權 確保 ◦ Aogola 漁場에서의 문어, 오징어 資源 開發
◦ 深海魚資源 開發	◦ 水平的인 規制擴大에 對應하기 위한 수직적인 漁場開發 ◦ 現在水深 200~300m의 大陸棚 漁場에 고치고 있어, 그 以深 漁場 約 1,000m까지에서의 未利用資源開發 推進		◦ 北洋에 있어서의 美·加·蘇 規制水城 外側漁場 開發 可能性 調査 ◦ 深海性 눈볼대類, 대구類, 가자미類 및 장어類의 加工과 需要 開拓
◦ 東南太平洋의 참치 漁業 開發	◦ IATTC(全美熱帶참치 保存委) 水城은 참치 旋網漁業의 本據地	◦ 我國 참치 旋網漁船은 全船이 西南太平洋 漁場에만 進出 操業中임.	◦ Mexico, Venezuela, Ecuador 등 產油國을 基地로 同國의 加工工場과 協力아래 東南太平洋의 참치 旋網漁業 進出.

韓國 水產業의 海外進出戰略에 관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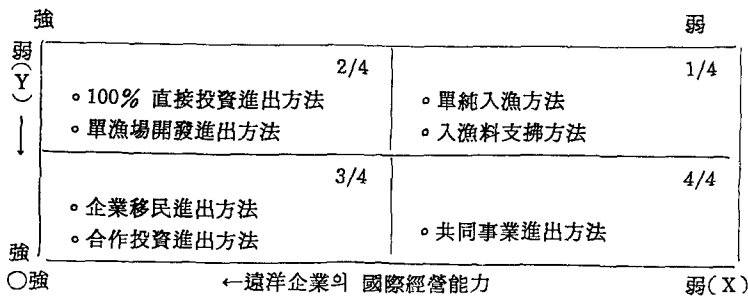
開發事業	開發의 必要性	現 況	問題點 및 開發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國과 餘他沿岸國間에 旋網漁業을 둘러싼 오랜 紛爭으로 美業界에서 撤收 日本 참치延繩漁船의 好漁場으로 高級魚의 周年操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uador을 基地로 南洋社가 協力事業으로 操業中이며, 德水物産이 最近入漁許可 取得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ench polynesia에서의 Payao를 利用한 旋網漁業 可能性 調査 獨航船의 高級魚種을 中心한 操業水域 擴大와 產油國의 低油類 使用으로 經營合理化指導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치 高緯度 漁場開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잡用 참치의 경우 高緯度 南北緯 30°以遠漁場의 Bluefin의 魚價는 他魚種에 比해 倍以上 高價로 販賣. 日本의 경우, 收益性 提高를 爲해 中緯度의 低價魚의 操業을 韓國, 臺灣으로 引繼하고 자들은 高緯度 操業을 獨占.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部 業體에서 經營改善策으로 濠洲南方漁場에서 操業하였으나 技術不足과 船員資質 問題로 失敗. 	<ul style="list-style-type: none"> Yellowfin, Bigeye 中心의 現獨船船 操業은 適正 魚價維持를 爲한 施策없이는 漸次 斜陽化 되어 나갈 것임. 漁期에 따라 高緯度操業과 中·低緯度操業을 並行함으로써 合理的인 操業指導.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치 大目流 網漁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最近 日本에서 연어, 송어 漁業以後 여름철 漁期를 爲한 참치流網漁業 成功 漁場이 日本의 東北部 太平洋上的 公海에서 形成되며 새치類와 함께 Moro, shark 등이 混獲. 	<ul style="list-style-type: none"> (株)東水에서 2隻의 試驗操業 許可 取得, 出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징어 流刺網漁業과의 兼業可能性에 대한 試驗操業. 東北太平洋高緯도에 있어서의 流網에 의한 Bluefin 漁場開發 可能性 調査. 200海里時代의 純粹公海操業에 의한 참치漁場 確保 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moa 等 海外基地船의 傘陽化에 對備 加工用 참치漁業의 可能性 調査 必要 	<ul style="list-style-type: none"> 漁船의 老朽化 收益性 低下에 따른 代替 建造 지연으로 漁船勢力 漸減 Samoa 其他 1981年 111隻 1982年 93隻 1983年 69隻(1983年 3月 31日 現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近海, 湄, 미드웨이 漁場 開發 代替新造漁船의 省力化, 小型化로 經營合理化 試驗 참치통조림 輸出市場 開發

資料 : 韓國遠洋漁業協會, 「業務現況報告」, 1983.

第5節 海外進出方法의 選定

이상에서 簡單히 살펴본 보와 같이 우리 나라의 遠洋漁業會社들은 進出 對象國의 興件에 따라 多樣한 海外進出戰略을 模索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 나라 遠洋漁業會社들이 海外進出方法을 選定할 때 活用할 수 있는 意思決定 Model을 提示하면 다음 <圖 3-1>과 같다.¹¹⁾

<圖 3-1> 韓國 水產業의 國際化的 戰略 Model



11) 趙東成, 「經營政策과 長期戰略計劃」, 英志文化社, 1982, pp. 384~385.

앞에서 提示된 戰略選定の 틀은 趙東成 教授의 國際化戰略「모델」을 우리 나라 水産業의 海外進出戰略에 應用한 것이다.

〈圖 3-1〉에서 Y축은 우리 나라 遠洋漁業會社들이 當面하고 있는 外部 興件 中에서도 國際的으로 가장 深刻한 隘路事項으로 擡頭되고 있는 沿岸國들의 우리 나라 遠洋漁業에 대한 進出規制 措置의 強度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 X축은 企業의 內部 興件인 財務能力, 國際經營能力, 「마케팅」 등에 대한 能力을 나타낸다.

X축과 Y축을 각각 2等分할 때 企業의 外部 및 內部 興件이 각각 相異한 4分面으로 나뉘어진다. 그 中 1/4分面은 弱한 外的 規制와 弱한 內的 能力을 나타내며, 이러한 興件에서는 水産業이 가장 適切한 國際化 戰略이 되는 單純入漁方法과 入漁料支拂方法이 된다. 2/4分面은 弱한 規制下에서 強한 能力을 가지고 있는 興件으로서 進出對象國에 積極的으로 浸透하여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해서는 100% 直接投資方法 및 漁場開發進出方法을 통한 漁業活動 그리고 窮極的으로 現地 生産活動까지도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3/4分面과 같이 進出對象國의 現地 直接投資에 대한 規制가 強化되면 企業은 한발 後退하여 現地人과의 合作投資 및 企業移民方法을 模索하여야 한다. 그러나 問題는 우리 나라 企業의 國際經營 力量이 갖추어지지 못한 狀況에서 登場하는 規制들로 말미암아 4/4分面의 興件이 닥치는 境遇이다. 이 때 企業이 蓄積한 技術이 있다면 現地 生産者에 대한 技術의 「라이선싱」으로 海外進出의 戰略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런 技術蓄積이 없이 그동안 人件費에서의 國際競爭力만을 바탕으로 遠洋漁業 活動을 해온 企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처럼의 進出 漁場에서 撤收해야 하는 딱한 處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2次元으로 나타나는 2개의 變數에 滿足하지 못하는 經營者는 3개의 變數에 의한 3次元의 立體로서 戰略「모델」을 開發해 보는 것도 한 方法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海外漁場進出의 諸方法과 特定方法의 選定에 관하여 論議하였다. 어떠한 意味에서 이들 諸方法은 特定遠洋漁業이 海外漁場에 進出하는 過程 또는 段階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事實上 大部分의 遠洋企業들은 段階的으로 海外漁場에 介入하게 된다. 예를 들면, 特定沿岸國에 大規模의 直接投資를 하기 전에 優先 單純入漁方法이나 또는 入漁料支拂方法을 통하여 그 나라에 進出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러한 方法을 통하여 現地 漁場을 充分히 把握한 후에 直接投資를 하는 것이 이에 따르는 危險負擔을 되도록 줄일 수 있는 方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海外漁場進出의 諸方法을 長期的인 觀點에서 分類·檢討하고, 必要한 境遇에는 段階別 戰略을 樹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特定遠洋漁業의 立場에서 어떠한 海外漁場 進出方法을 選定하는 가는 매우 重要한 問題이다. 이는 海外漁場進出 方法에 따라 人的·物的 資源의 投入量, 漁場情報의 獲得 및 漁場入漁의 程度, 現地에서의 「마케팅」活動에 대한 統制可能性이 모두 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窮極的으로는 企業의 販賣額 및 利益, 그리고 海外漁場에서의 企業의 危險負擔 程度 등 海外漁場 進出成果가 決定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海外漁場進出의 目的, 企業의 規模와 經營能力 그리고 蓄積된 海外漁場進出經驗 등을 體系的으로 分析한 후에 魚種 및 進出對象國의 特性에 따라 活用可能한 進出方法중 가장 適合한 方法을 選定하여야 한다.

第三章 遠洋漁業의 國際化促進政策

第一節 國際水產機構加入 및 雙務國間 水產協定締結의 擴大

1. 國際水產機構 加入擴大

〈表 4-1〉에는 우리 나라가 加入한 國際水產機構의 現況이 要約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最初로 1950年 1月 19日에 美國, 日本, 濠洲, 佛蘭西, 뉴질랜드, 방글라데쉬 等 19個國이 加入하고 있는 印度太平洋水產委員會(IPFC)에 加入한 이래 現在까지 모두 9個의 委員會에 加入하였다. 즉 우리 나라는 全世界 水域을 總轄하는 UN의 FAO 水產委員會(COFI), 印度洋水域을 管轄하는 印度洋水產委員會(IOFC), 中東大西洋을 管轄하는 中東大西洋水產委員會(CECAF), 大西洋 참치資源을 管掌하는 大西洋 참치保存委員會(ICCAT), 中西大西洋을 管轄하는 中西大西洋水產委員會(WECAFC), 世界水域의 고래資源을 管掌하는 國際捕鯨委員會(IWC), 東南大西洋水域을 管轄하는 東南大西洋水產委員會(ICSEAF), UN海洋法協約 等에 加入하였다.

〈表 4-1〉 韓國의 國際水產機構加入 現況 (1983年 3月 31日 現在)

機 構 名	設置年度	加 入 國 名	我國加入日字	管 轄 水 域	本部所在地
1. 印度太平洋水產委員會 (IPFC)	1948.11. 9	19 (美, 日, 濠, 佛, 뉴질랜드, 방글라데쉬 等)	1950. 1. 19	印度洋 및 太平洋	Bangkok, Thailand
2. UN FAO 水產委員會 (COFI)	1965. 5	96(美, 日, 佛 等)	1965.12	世 界 水 域	Rome, Italy
3. 印度洋水產委員會 (IOFC)	1967. 6. 12	37(美, 日, 濠, 佛, 印, 西, 바레인, 스리남 等)	1967.12.13	印 度 洋	Rome, Italy
4. 大西洋참치保存委員會 (ICCAT)	1966. 5. 14	19(美, 日, 加, 蘇, 브라질, 쿠바 等)	1970. 8. 19	大 西 洋	Madrid, Spain
5. 中東大西洋水產委員會 (CECAF)	1967. 9. 19	30(美, 日, 英, 西, 나이지리아, 모록코, 모리타니아 等)	1968. 1. 10	中 東 大 西 洋	Rome, Italy
6. 中西大西洋水產委員會 (WECAFE)	1973. 11	24(美, 英, 佛, 쿠바, 파나마 等)	1974. 1	中 西 大 西 洋	Rome, Italy
7. 國際捕鯨委員會 (IWC)	1946. 12. 2	25(美, 英, 日, 蘇, 西, 濠, 노르웨이, 스위스 等)	1978.12.29	世 界 水 域	London, UK
8. 東南大西洋水產委員會 (ICSEAF)	1969. 10	15(日, 西, 獨, 伊, 루마니아, 南阿 等)	1981. 1. 19	東 南 大 西 洋	Madrid, Spain
9. UN海洋法協約 (UNCLOS)	1982.12.10		1983. 3	世 界 水 域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資料 : 水產廳, 「水產施策」, 1983.

그러나 앞으로 우리 나라 政府가 加入을 推進하여야 할 必要性이 큰 國際水產機構는 많다.

우리 나라는 적어도 東部太平洋 참치資源을 管掌하는 全美熱帶참치委員會(IATTC), 北西大西洋水域을 管轄하는 北西大西洋水產委員會(NAFO), 北太平洋水域을 管轄하는 北太平洋水產委員會(INPFC)와 南極 南緯 60° 以南을 營轄하는 南極海洋生物資源保存委員會 等の 4個 委員會에는 빠른 時日內에 加入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表 4-2 參照)

〈表 4-2〉 加入必要性이 큰 國際水産機構

機 構 名	設置年度	加 入 國	管 轄 水 域	本 部 所 在 地
1. 全美熱帶참치委員會 (IATTC)	1949. 5	6(美, 日, 加, 佛, 니카라구아等)	東 部 太 平 洋	La Jola, Calif. U. S. A.
2. 北大西洋水産委員會 (NAFO)	1979. 1	13(蘇, 불가리아, 노르웨이, 폴란드等)	北 西 大 西 洋	Nava Scotia Canada.
3. 北太平洋水産委員會 (INPFC)	1953. 6	3(美, 日, 加)	北 部 太 平 洋	Vancouver, Canada.
4. 南極海洋物資源保存委員會	1981. 1	19(美, 英, 日, 蘇, 佛, 獨, 濠, 아르헨티나, 칠레, 뉴질랜드, 노웨이等)	南 極 60°S 以 南	Tasmania, Australia

資料：水産廳, 「水産施策」, 1983.

各種 國際水産機構는 海洋水産生物 資源의 調査와 研究를 目的으로 設置되었으나 水産資源의 濫獲傾向으로 인하여 最近에는 管轄水域內의 水産資源을 保存하고 持續的인 利用을 圖謀하기 위하여 많은 努力을 기우리고 있다. 이 結果 國際水産機構들은 魚體長, 漁場, 漁期, 漁法, 漁獲量 및 網目等을 制限하고 있을 뿐 아니라 資源調査 義務의 賦課 等을 實施하는 등 그 機能이 變化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遠洋漁業의 進出에 적지 않은 負擔을 주게 되었다.

國際水産機構의 이러한 機能變化의 例로 東南大西洋水産委員會(ICSEAF)를 보면, 이 委員會는 發足 當時의 目的은 資源의 研究와 調査에 있었으나 最近에는 「쿼타」量을 割當하는 등 水産資源의 保護를 위한 規制機能을 行事하고 있다. (表 4-3 參照)

〈表 4-3〉 ICSEAF 海域 年度別 Hake 쿼타量 現況 (單位: %)

年 度 別	全 體 「쿼 타」 量	對 韓 國 「쿼 타」 量	進 出 企 業
1980	320,000	—	—
1981	211,841	3,800	未 出 漁
1982	352,000	6,203	大 林 水 産 (株)

資料：水産廳, 「水産施策」, 1980.

또한 美國, 日本 等 太平洋沿岸 8個國이 加入하고 있는 全美熱帶참치委員會(IATTC)도 大西洋 참치保存委員會(ICCAT)와 함께 資源保護를 위해 一定 體重 以下의 참치는 漁獲을 못하도록 規制하는 등 資源管理 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8隻의 우리 나라 참치旋網漁船이 2年前부터 出漁하고 있는 이 水域에 統數制限이 앞으로 實施될 境遇 이 機構에 未加入됨에 따른 打擊이 클 것으로 豫想된다¹²⁾.

이상에서 簡單히 살펴본 바와 같이 各種 國際水産機構의 機能變化로 우리 나라 遠洋漁業會社들은 過去와 같은 單純入漁方法으로는 海外漁場을 確保하기가 점점 어려운 趨勢에 있다. 따라서 今後 國際的인 또는 地域的인 水産機構에의 參與의 幅을 大幅 擴大하여야 할 必要性이 더욱 切實해 지고 있다. 또한 이미 加入한 委員會들의 動向에 대한 情報蒐集은 勿論 이들 委員會의 各種 會議에도 官民共同으로 積極 參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國際水産機構의 加入을 擴大시켜야 할 必要性을 論議하기 위하여 캐나다, 노르웨이 및 蘇聯 等

12) 韓國遠洋漁業協會, 「참치旋網統數制限을지임」, 遠洋漁業, 第443號, 1982年 5月 18日, pp.13~14.

韓國 水産業의 海外進出戰略에 관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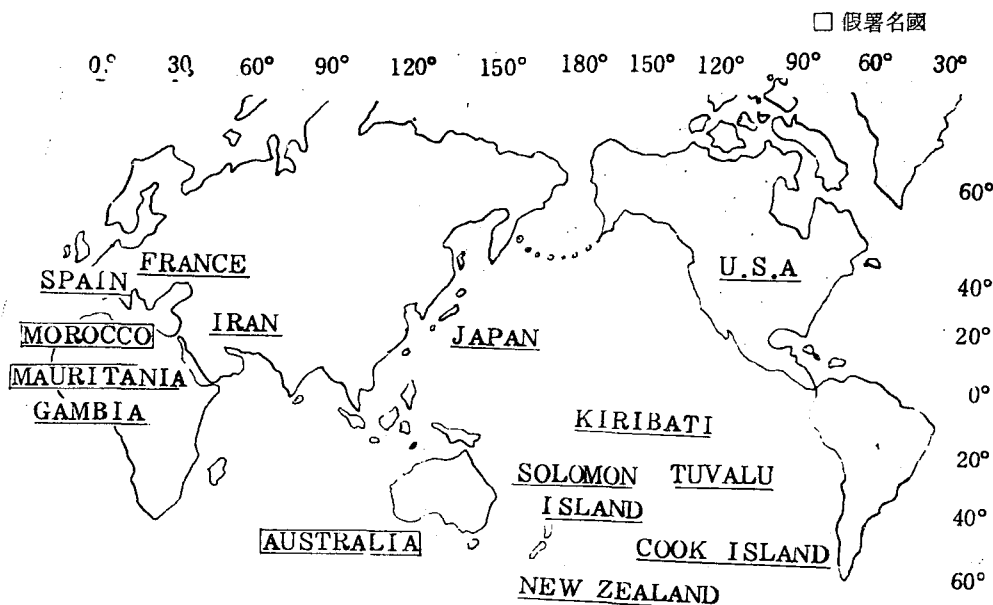
11個國이 加入하고 있는 北大西洋水産委員會(NAFO)의 境遇를 보면, 管理水域이 周邊 沿岸國의 200海里, 外側水域으로 限定되어 있어 現在로서는 非會員國이 操業할 境遇도 強制規制를 할 수 없다. 이러한 點을 槪案하여 우리 나라 政府는 1981年에 2個 企業으로 하여금 出漁 開發하도록 許容하고는 있다. 그러나 앞으로 同委員會의 機構變化가 豫想되므로 이에 積極的으로 對處하고, 또한 效率的인 資源情報 交換을 위하여도 同委員會에 加入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2. 雙務國間 水産協定 締結의 擴大

200海里 經濟權水域 또는 領海內的 入漁許容은 沿岸資源 保有國과 進出하는 出漁國과의 雙務國間的 協力問題이므로 兩當事國間的 協定締結 擴大는 切實히 必要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主要 國際水産協定の 締結 對象國은 46個國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이미 協定을 締結한 國家는 美國, 日本, 뉴질랜드, 佛蘭西, 투발루, 키리바시, 솔로몬, 쿡諸島, 이란 및 감비아 등 11個國이고 모록코, 모리타니아 및 濠洲 등 3個國은 假署名國으로 繼續 協定締結을 推進中에 있다.

또한 세네갈, 수리남, 코스타리카, 에쿠아돌, 아르헨티나 및 인도네시아 등 6個國과는 合意覺書가 交換되었으며, 세이셸, 파키스탄, 멕시코, 기니비사우, 바레인, 오만 및 케냐 등 7個國과는 民間 協력이 活發히 이루어지고 있다. (圖 4-2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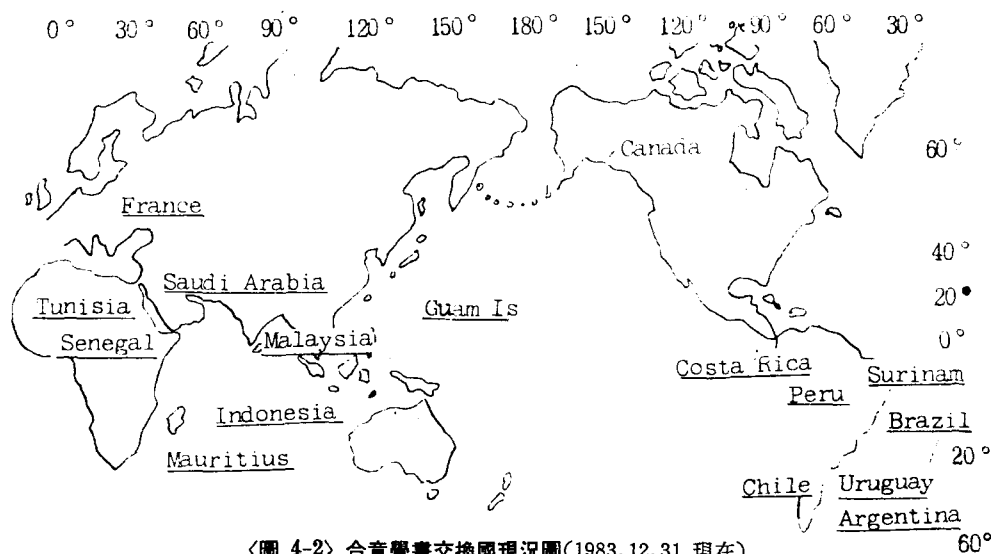


〈圖 4-1〉 漁業協定締結國現況圖(1982.12.31 現在)
FISHERY AGREEMENT concluded Nations

資料：韓國遠洋漁業協會, 「韓國의 遠洋漁業」, 1983.

이 밖에도 現在 協定을 推進中인 國家는 베네주엘라, 파푸아뉴기니아, 통가, 휘지, 서사모아, 라이베리아, 나이제리아 및 가봉 등 8個國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沿岸國과의 水産協力を 더욱 強化할 必要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水産協定



〈圖 4-2〉 合意覺書交換國現況圖(1983.12.31 現在)
AGREED NOTES exchanged Nations

資料：韓國遠洋漁業協會，「韓國의 遠洋漁業」，1983.

의 締結을 擴大해 나아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既協定締結 11個國과의 持續的 友好增進도 요망되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는 海外駐在 水産官의 增員뿐만 아니라 協力強化에 活用할 수 있는 豫算을 增額할 必要가 있다.

第二節 經濟 및 水産技術協力の 強化

大部分의 沿岸國들은 互惠主義의 原則에 의거한 經濟 및 技術協力 등을 條件으로 하여 入漁를 許容하는 水産政策으로 轉換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리타니아國은 入漁條件으로 冷凍工場施設의 無償援助, 모록코國은 合作投資事業을 위한 借款을 要求하고 있다. 또한 南太平洋 島嶼諸國들은 過多한 經濟 및 技術援助를 要求하거나, 合作投資 條件의 對象國에 不利한 各種 要求를 하여오는 傾向에 있다.¹³⁾

이 밖에도 스리남國은 自國漁民用 漁船建造 및 各種 機器의 援助를 要請하고 있다. 또한 自國沿岸漁船 5隻用 디젤엔진 代金條로 US \$ 15萬, 水産物 品質管理檢査 機資材用 US \$ 10萬 및 技術者 派遣 등 많은 經濟援助를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後發 新生獨立國들은 自國政府財政의 一部를 充當하고 自國水産資源의 開發을 위한 技術導入 등을 目的으로 多樣한 經濟 및 技術協力を 願하고 있다.

이러한 理想的인 與件을 勘案하여 政府에서는 既存漁場의 確保와 新漁場 開發의 效率的 遂行을 위하여는 進出對象國에 대한 政府次元의 經濟 및 技術協力を 통하여 遠洋企業의 海外進出이 容易하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支援方案을 強化할 必要가 있다.

이와 더불어 每年 沿岸國의 水産關係의 主要 高位人士를 招請하고, 또한 沿岸國에 訪問交渉도 補

13) 韓國遠洋漁業協會，「海洋 200海里時代의 遠洋漁業育成對策」，1982年 7月, p.11.

強시켜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研修生 招請訓練, 專門家の 派遣에 의한 技術指導 乃至 移轉 等 經濟 및 技術協力事業을 擴大하되 國際水産機構加入 및 雙務國間水産協定 締結이 有利하게 成就되게 「매취」시킨 適正한 人員이 되어야 할 것이다. (表 4-4 參照)

〈表 4-4〉 政府的 對外技術 供與實績 (單位: 名)

區 分	年度別	政府的 對外技術 供與實績				
		1968~1978	1979	1980	1981	1982
研 修 生 訓 練		81	14	24	20	44(28個國)
專 門 家 派 遣		4	1	—	4	4 (3個國)

資料: 水産廳, 「業務報告」, 1983.

第三節 水産技術革新의 促進

開發國들은 活潑한 技術革新을 통하여 遠洋漁業의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人工衛星으로부터 海水表面의 水溫情報를 漁船에 알리는 「리모트 센싱」技術, 人工衛星을 中繼基地로 하는 漁船 電話의 本格的인 活用, 그리고 人工衛星으로부터의 情報를 漁船에서 直接 受信할 수 있는 機器의 發場 등 尖端技術을 積極的으로 利用하고 있다.¹⁴⁾

또한 水産業界에서 아직도 「로봇」化는 늦은 감은 있지만 가다랭이 自動釣機 等 人間을 代身하여 操業하는 機械가 一部에서는 이미 活用되고 있다. 이러한 漁業生産 分野에서의 省力機器의 開發은 漁業技術 開發이 本格化 됨에 따라 더욱 活潑해질 것으로 豫想된다.¹⁵⁾ 人間の 힘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作業이 海洋開發이나 漁業分野에는 특히 많으므로 自動化와 「로봇」化의 必要性은 크다고 본다. 예를 들면, 漁船上에서 釣獲을 하고 漁船內에서 魚種에 따라 選別分類한다든가 漁船內 作業場에서 魚頭, 찌꺼기 및 內臟 等を 除去하는 等 加工後 箱子에 담는 作業도 自動化될 수 있을 것이다.

漁業界의 「로봇」化의 代表的인 예는 가다랭이 釣漁業이라 할 수 있으며, 先進國의 遠洋業界에서는 이미 많은 企業들이 이를 導入·活用하고 있다.

이러한 自動化, 「로봇」化를 통하여 先進漁業技術國인 佛蘭西, 挪웨이, 덴마크, 美國 等은 같은 규모의 漁船이면서도 1/10의 漁船員으로 操業하고 있다. 또한 한隻의 漁船으로 3~5種의 漁法이 可能하도록 多目的 漁船化를 이룩함으로써 漁間期의 問題를 解決하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1人當 國民所得이 매우 낮았던 1960年代까지는 海上職種이 相對的으로 높은 所得을 保障할 수 있어서 遠洋業界는 開發國과 比較하여 훨씬 低廉한 賃金으로 優秀한 人力을 安定的으로 確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經濟發展에 따른 賃金 水準의 上昇으로 우리 나라도 開發國들과 마찬가지로 遠洋漁業의 自動化, 「로봇」化를 推進할 必要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우리 나라도 自動化, 「로봇」化를 위한 技術開發에 많은 關心을 기울여야 한

14) 韓國遠洋漁業協會, 「漁業界에도 人工衛星時代到來」, 遠洋漁業, 第460號, 1983年 1月 18日, pp.65~66.

15) 韓國遠洋漁業協會, 「暮오르는 漁業生産 로봇化時代」, 遠洋漁業, 第469號, 1983年 1月 18日, pp.61-64.

다. 現在 官民一體로 着手하고 있는 漁業技術의 再開發 課題에도, 「로보트」化, 自動化 및 省力化 課題는 반드시 包含시킬 必要가 있다. 또한 가다랭이 참치 漁業과 참치 延繩 漁業에서의 投·揚繩 作業이나 魚籽 荷積 作業 等の 「로보트」化 研究도 進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水産分野」에 있어서 省力化를 통한 費用削減은 우리 나라 遠洋 業界의 最大 課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第四節 金融 및 稅制 支援의 強化

現行 우리 나라는 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漸進的으로 擴大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金融, 保險 및 稅制面에서 各種 支援 裝置를 마련하고 있다. 金融面에서 海外直接投資를 支援해 주기 위하여 政府는 輸出入銀行을 통해서 「海外事業 및 出資資金」과 「海外投資資金」을 支援해 주고 있다. 또한 投資受容國 輸出入銀行은 海外投資保險을 管掌하고 있다. 이 保險은 戰爭, 內亂, 被投資國의 外換統制 등 政治危險에 대해 事故元金 및 事故配當請求權의 90%까지 補償하도록 되어 있다. 稅制面에는 海外投資額의 10%까지 損費處理로 認定하는 海外投資損失準備金과 外國納付稅額에 대한 稅額控除 海外資源開發事業配當所得免除 等이 있다.

그러나 특히 遠洋 業界의 海外投資에 대한 우리 나라의 支援制度는 아직도 未備한 點이 많다.

예를 들면, 金融面에서는 資金支援의 規模를 擴大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專用基金을 設置하여 海外遠洋 漁業投資와 資源開發輸入에 대하여 이를 重點的으로 支援할 必要가 있다. 또한 外換使用認可上의 例外를 認定해야 할 것이다. 保險面에서는 現行 海外投資保險의 要件을 擴大하여 政治的 危險뿐만 아니라 信用危險까지 包括해야 하며, 稅制面에서는 海外投資損失準備金制를 確充하여 損費의 認定幅을 擴大해야 할 것이다.¹⁶⁾

우리 나라의 海外水産業은 自己資本 比率이 낮아 財務構造가 매우 脆弱하다. 이 뿐만 아니라 生産手段인 漁船은 現在 船齡 16年以上이 全體漁船의 35.4%, 11~15년이 11.8%로 一般的으로 老朽化되어 生産性은 低下되고 修理費는 過多히 支出되므로 國際競爭力이 弱화되고 있다.(表 4-6 參照)

<表 4-5> 年度別, 業種別 漁船隻數 現況

業種別 年度別	관 치 트 물						其 他	合 計
	基地船	獨航船	채 낚기 漁 船	一般漁船	北洋船	새우漁船		
1977	287	214	38	140	32	130	9	850(100.0%)
1978	266	216	39	111	33	124	27	816 (96.0%)
1979	234	217	38	103	40	120	27	779 (91.0%)
1980	220	219	35	90	39	112	35	750 (88.0%)
1981	199	208	23	90	44	111	50	725 (85.0%)
1982	148	181	24	87	44	107	92	683 (80.0%)

資料 : 韓國遠洋漁業協會, 「業務現況報告」, 1983.

이 뿐만 아니라 出漁經費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油類價는 1972年 對比 8倍로 暴騰하였으나 魚價는 同年 對比 3倍로 이를 따르지 못하여 經營收支에 甚한 壓迫을 加重시켰을 뿐만 아니라 從前

16) 國際經濟研究院,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展望」, 1978年 6月 30日, pp.55-60.

〈表 4-6〉 漁船老朽現況分析(1982.12.31 現在)

船 齡 別	1~5	5~10	11~15	16歲以上	計
隻 數	35	271	135	242	683
構 成 比 率	5.1%	39.7%	19.8%	35.4%	100%

資料：韓國遠洋漁業協會，「業務現況報告」，1983.

의 操業漁場의 喪失과 入漁料의 追加負擔으로 因한 慢性的 收支惡化가 그 主要原因이 되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도 우리 나라의 先進水産國 地位를 繼續 維持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遠洋漁業의 育成策을 水産行政의 基本方向 및 重點對策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하여 政府에서는 狹少 해진 海外漁場을 擴大하고 入漁上의 安定操業을 위한 興件을 마련하기 위하여 海外進出漁船에 대한 出漁資金 및 海外水産協力資金을 大幅 增額시켜 주는 등 積極的인 支援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業界로 하여금 國內外的으로 어려운 興件에 對處해 나갈 수 있도록 企業自體 内部的 經營 合理化와 非經濟性 各種 資産의 果敢한 處分으로 財務構造의 改善을 期하고 老朽漁船의 代替로 生産性을 向上시키도록 政策的으로 誘導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計劃造船의 物量擴大와 漁船建造를 獎勵하기 위한 政策的 支援은 물론 一部 中古船을 連繫導入시켜 船幅增大를 할 수 있도록 支援을 強化할 必要가 있다.

〈表 4-7〉 및 〈表 4-8〉의 漁船建造 및 導入 隻數로는 35.4%를 차지하는 16年以上的의 老朽船 242 隻을 代替하는 데에도 相當히 未洽하다고 볼 수 있다. 〈表 4-6 參照〉

〈表 4-7〉 漁船建造現況

年度別	1979	1982	計
隻 數	11	4	15
噸 數	4,715	1,280	5,955

資料：韓國遠洋漁業協會，「業務現況報告」，1983.

〈表 4-8〉 中古船導入現況

年度別	1980	1981	1982	計
隻 數	4	5	7	16

資料：韓國遠洋漁業協會，「業務現況報告」，1983.

끝으로 水産業 經營에서 發生한 收益 및 果實 등은 水産關聯 分野에 再投資하도록 政府에서 誘引 할 必要가 있다.

예를 들면 陸上의 水産加工業과의 連繫性이 없는 事業 즉, 前方 統合戰略이 아닌 投資가 될 境遇는 水産政策 金融을 中斷하는 制裁手段도 考慮해 볼 必要가 있다.

第五節 外換管理業務의 改善

遠洋漁業의 特殊性 때문에 遠洋漁業會社들은 船舶機械, 機關 등 各種 裝備 및 船具의 大部分을 現地인 外國에서 購入하여 이를 使用하거나 또는 設置하여야 할 境遇가 많다. 船舶 運航上 緊急한 所要品目を 外國에서 買收하여 漁船에 交替할 때 海外에 있는 遠洋漁業 基地에서 緊急히 發生되는 外貨使用의 必要性은 海外水産業 經營에는 避할 수 없는 問題點이다.¹⁷⁾

이러한 境遇 事前 購入하여 設置 乃至 使用後 漁獲物 販賣代錢에서 控除하는 등 現在의 外換關係

17) 張元碩, 「食糧政策과 水産業」, 韓國水産振興會, 1982年 9月, pp.49-50.

의 諸般 營理規程을 遵守하지 못하는 遠洋漁業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外換營理規定을 緩和해 줄 必要가 있다. 예를 들면, 現地 保稅倉庫 管理規程과 같은 例外措置가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現行 10%의 關稅를 負課하고 있는 漁船의 機資材도 輸出用 原·副資材 또는 施設材 처럼 同一 取扱하여 海外에서 修理 및 使用機資材 代金은 特別한 外換管理規定에 의거 關稅의 減免 措置가 되어야 할 것이다.

第四章 結 論

第一節 要約 및 結論

水産物은 다른 食糧資源과 比較할 때 아직도 豊富하고 開發可能性의 餘地가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水産業은 그간 飛躍的인 發達로 現在 世界上位圈의 水産國으로 生産은 9位, 輸出은 5位에 到達하였으나 最近에는 그 伸張이 鈍化되었다. 이는 經濟水域 200海里의 宣布로 領海의 擴張, 各種 國際水産機構의 機能變化, 規制水域의 擴大, 不法拿捕, 油價의 急上昇, 魚價의 下落, 資源의 民族主義(resources nationalism)化와 이에 따른 水産資源의 武器化, 漁船의 老朽化, 人件費의 上昇 등으로 우리나라 遠洋業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沿岸國들은 禁漁場, 禁漁法, 禁漁種, 禁漁期, 禁漁體長, 網目の 制限擴大 및 漁獲[쿼타]의 割當 등의 規制強化 外에도 過多한 入漁料의 支拂要求와 現地人 船員의 乘船 義務의 賦課 등 날로 規制를 強化하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에 効率的으로 對處해 나가기 위하여는 우리 나라의 遠洋企業들은 多樣한 海外進出 戰略을 體系的으로 摸索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既存의 海外漁場에의 進出方法인 單純入漁方法과 入漁料支拂方法 등의 問題點을 體系的으로 分析하고 또한 海外直接投資, 企業移民, 共同事業, 漁場開發 등 代案的인 海外漁場進出 方案을 檢討하였다. 더 나아가서 特定遠洋企業의 立場에서 여러 가지의 海外進出方法을 어떠한 觀點에서 어떻게 選定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인가 하는 問題도 論議하였다.

우리 나라 遠洋企業들의 海外進出과 企業의 國際化를 推進시킬 수 있는 國家政策도 誘引政策의 틀에서 檢討하였다.

마지막으로 本 研究의 結論으로서 우리 나라 遠洋漁業의 海外進出을 効率的으로 뒤받침하여 주기 위하여는 國際水産機構加入 및 雙務國間 水産協定締結 擴大, 經濟 및 技術協力の 強化, 水産技術革新의 促進, 金融 및 稅制支援의 強化 및 政府의 外換營理業務의 改善 및 實踐方案 등을 提示하였다.

第二節 未來의 研究課題

本 研究에서는 時間과 資料의 制約上 주로 우리 나라 遠洋漁業의 海外進出의 代案的 方法과 이에 關連된 國家의 政策方向을 概括的으로 檢討하였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深層있게 分析하지 못한 關聯 研究 課題가 많으며, 이는 앞으로 重要한 研究課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未來의 研究課題를 提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 水產業의 海外進出戰略에 관한 研究

1. 遠洋企業의 進出對象國別, 基地別, 漁場의 海域別, 漁法別 우리 나라 遠洋企業의 海外進出 事例의 分析 및 이에 따른 海外進出戰略에 관한 研究.
2. 開發國의 多國籍遠洋企業의 經營戰略에 관한 事例分析.
3. 遠洋企業의 國際環境變化에 대한 豫測과 우리 나라 遠洋企業의 對應方案.
4. 遠洋企業의 海外加工施設 「턴키」契約 進出方案.
5. 國際的 次元에서의 遠洋企業의 前後方 垂直的 統合戰略에 관한 研究.
6. 遠洋漁業의 國際化 促進政策의 優先順位 決定에 관한 研究.

參 考 文 獻

- 金貞世, 朴大衛, 「貿易學概論」, 博英社, 1983.
- 潘柄吉, 「多國籍企業論」, 博英社, 1979.
- 潘柄吉, 「마케팅管理論」, 西江大, 經營大學院教材, 1982.
- 潘柄吉, 「國際經營論」, 博英社, 1982.
- 池龍熙, 「國際經營學」, 西江大, 經營大學院教材, 1981.
- 池龍熙, 「技術資本導入政策再吟味」, 每日經濟新聞, 1983年 2月 1日~5日.
- 池龍熙, 「不確實性下의 意見決定」, 西江大, 經營大學院教材, 1982.
- 朴大衛, 「貿易實務」, 法文社, 1981.
- 李宇鏞, 「마케팅크라식스」, 博英社, 1978.
- 金廣斗,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한 技術革新研究」, 國際經濟研究院, 1981.
- 趙東成, 「經營政策과 長期戰略計劃」, 英志文化社, 1982.
- 水產廳, 「水產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文苑社, 1982.
- 水度廳, 「遠洋漁業의 現況과 育成策」, 1981.
- 水產廳, 「水產施策」, 1983.
- 水產廳, 「業務報告」, 1983.
- 水產廳, 「周邊國의 200海里 經濟水域設定에 따른 沿近海漁業對策」, 1982.
- 韓國遠洋漁業協會, 「海洋 200海里 時代의 遠洋漁業育成對策」, 1982.
- 韓國遠洋漁業協會, 「遠洋漁業統計」, 1981.
- 韓國遠洋漁業協會, 「韓國遠洋漁業의 位置와 그 새로운 進路」, 1982.
- 韓國遠洋漁業協會, 「業務現況報告」, 1983.
- 韓國遠洋漁業協會, 「主要業務報告書」, 1982.
- 柳炳華, 「締結된 海洋法協約展望과 韓國의 對策」, 每日經濟新聞, 1982年 12月 14日.
- 張元碩, 「食糧自給化 政策上 水產業의 重要性」, 韓國水產振興會, 1981.
- 張元碩, 「食糧政策과 水產業」, 韓國水產振興會, 1982.
- 朴騏哲, 「水產物輸出多邊化方案研究」, 水產廳, 1982.
- 金奉安, 「아르헨티나國 現況 및 漁業進出方案」, 水產廳, 1981.
- 金在哲, 「韓國의 참치 旋網漁業 그 現實과 未來」, 現代海洋社, 1983年 1月.
-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國際經濟의 最近動向」, 1982.
- 國際經濟研究院,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展望」, 1978.
- 國際經濟研究院, 「新國際經濟秩序의 課題와 展望」, 1978.
- 國際水產開發研究院, 「漁業水域總鑑」, 法文社, 1981.
- 農水產部, 「水產統計年報」, 1982.

- 韓國銀行, 「우리 나라의 海外投資制度」, 1981.
- 高田 清, 「200カイリ戰爭」, 創土社, 1977年 5月 15日.
- 平澤 豊, 「二百カイリ時代と日本漁業」, 協利印刷, 1978.
- 柳基鉉, 「國際經營論」, 博英社, 1982.
- 申泰榮, 「아르헨티나 漁業移住의 必要성과 그 展望」, 現代海洋社, 1982年 6月.
- 金會千,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of establishing Tradecreating Joint-Venture in edible Marine Products」. 水産廳. 1980.
- 韓國遠洋漁業協會, 「週刊遠洋漁業」, 1981-1983年 3月.
- 鄭周永, 「月刊 全經聯」, 通卷 202號, 高麗書籍, 1981年 9月號.
- Highway Publications Ltd., "Fishing News International", London, England, 1981-1983.
- PIC Industrial Press Ltd., "World Fishing", London, England, 1981-1983.
- Australian Fisheries Div., "Austalian Fisheries", Canberra, Australia, 1977-1983.
- NOAA, "Marine Fisheries Review", Wash., U.S.A. 1981-1983.
- Société Anonyme, "La pêche Maritime", Paris, France 1981-1983.
- Glueck, William F., "Business Policy & Strategic Management. 3rd Ed.", McGraw-Hill, N.Y. 1980.
- UN, FAO, "Year Book of Fishery Statistics", Rome, Italy, 1982.
- Albert W. Koers, "International Regulation of Marine Fisheries", Fishing News(Book) Ltd., London, England, 1973.

Foreign Entry Strategies for Korean Fishery Firms.

Hoe-John Kim

Summary

Fishery resources are still abundant compared with other resources and the possibility of exploitation is probably great. The Korean fishery industry has grown remarkably since 1957, and Korea is ranked as one of the major fishery countries. Its output of fishery products reached the 9th in the world and the value of exports was 5th in 1982. But recently a growth rate has slowed down, due to the enlargement of territorial seas by the declaration of the 200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tendency to develop fishery resources strategically in international bargaining, the change in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expansion of regulated waters, the illegal arrest of our fishing boats, the rapid rise in oil prices, and the fall in fish prices, the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as a symbol of nationalism, the fishing boats decreptitude, the rise of crew wages, regulations on fishing methods, fish species, fishing season, size of fish, and mesh size, fishing quotas and the demand of excessive fishing royalties. Besides the the obligation of coastal countries, employing crews of their host countries is also an example of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hich causes the aggravation of foreign profit of fishing firms.

To ameliorate the situation, our Korean fishery firms must prepare efficient plans and study systematically to internationalize themselves because such existing methods as conventional fishing entry and licence fishing entry are likely to be unable to cope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Thus, after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problem, some new combined alternatives might be proposed. These are some of the new schemes to support this plan showing the orientation of our national policy:

1. Most of the coastal states, to cope with rapi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and to survive in the new era of ocean order, have rationalized their higher governmental structure concerning the fishery industries. And the coastal countries which are the objectives of our expecting entry, demand excessive economic and technical aid, limit the number of fishing boats' entry and the use of our foreign fishing bases, and regulate the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fishery commissions. Especially, most of the coastal or island countries are recently independent states, which are poorer in national budget, depend largely on

fishing royalties and licence entry fees as their main resources of national finance.

2. Alternatives to our entry to deep sea fishing, a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are by direct foreign investment method. About 30 firms have already invested approximately US\$ 8 million in 9 coastal countries.

Areas of investment comprise the southern part of the Atlantic Ocean, the Moroccan sea and five other sea areas. Trawling, tuna purse seining and five other fields are covered by the investment. Joint-venture is the most prominent method of this direct investment.

If we consider the number of entry firms, the host countries, the number of seas available and the size of investment, this method of cooperation is perhaps insufficient so far.

Our fishery firms suffer from a weakness in international competitive ability, an insufficiency of information, of short funds, incompetency in the market, the unfriendliness of host coastal countries, the incapability of partners in joint-ventures and the political instability of the host countries.

To enlarge our foreign fishing grounds, we are to actively adopt the direct investment entry method and to diversify our collabo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onsequently, besides proper fishing, we might utilize forward integration strategies, including the processing field.

a. The enterprise emigration method is likely to be successful in Argentina. It includes the development of Argentinian fishing grounds which are still not exploited in spite of abundant resources.

Besides, Argentina could also be developed as a base for the exploitation of the krill resources and for further entries into collaboration with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b. The co-business contract fishing method works in American territorial seas where American fishermen sell their fishery products to our factory ships at sea. This method contributes greatly to obtaining more fishing quotas and in innovating bottom fishing operations. Therefore we may apply this method to other countries to diffuse our foreign fishing entry.

c. The new fishing ground development method was begun in 1957 by tuna long-line experimental fishing in the Indian Ocean. It has five fields, trawling, skipjack pole fishing and shrimp trawling, and so on.

Recently, Korean fisheries were successful in the development of the Antarctic Ocean krill and tuna purse seining.

3. The acceleration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deep sea fishing;

a. Intense information exchange activities and commission participation are likely to be continued as our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fishery organizations.

We should try to enter other international fishery commissions in which we are not so far participating.

And we have to reform adequately to meet the changes of the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s.

With our partner countries, we ought to conclude bilateral fishery agreements, thus enlarging our collaboration.

- b. Our government should offer economic and technical aids to host countries to facilitate our firms' fishery entry and activities.
- c. To accelerate technical innovation, our fishery firms must invest greater amount in technical innovation, at the same time be more discriminatory in importing exogeneous fishery technologies.

As for fishing methods; expanded use of multi-purpose fishing boats and introduction of autom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prevent seasonal fluctuations in fishery outputs.

- d.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financial and tax aid to Korean firms in order to elevate already weak financial structure of Korean fishery firms.
- e. Finally, the government ought to revise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being applied to deep sea fishery firms. Furthermore, duties levied on foreign purchased equipments and supplies used by our deep sea fishing boats should be reduced or exempted. when the fish caught by Korean partner of joint-venture firms is sold at the home port, pusan, import duty should be exempted.